

임종희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 초판 1쇄 정오표

(2022년 11월 16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2년 11월 16일 발행된 “임종희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 초판(2022년)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종희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 초판(2022년) 1쇄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2년 11월 16일 기준)

2022년 11월 16일 발행된 임종희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초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사항
p. 5~6	<p>[아래 내용 전체 삭제]</p> <p>(3) 사법경찰관리의 권한</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div> <p>① 사법경찰관</p> <p>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이자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임의수사·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즉, ㉠ 범죄인자 ㉡ 검사에 대한 각종 영장신청 ㉢ 피의자체포·구속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실황조사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리</p> <p>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보조기관으로서 ㉠ 영장집행권 ㉡ 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도받을 권한 ㉢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 등이 있다.</p>
p. 7 12번째 줄	<p>[오타자 수정]</p> <p>㉠ 검사의 보완수사구 및 사법경찰관의 조치(197조의2)</p> <p>➔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사법경찰관의 조치(197조의2)</p>
p. 18 4.-(1) -①-㉠ 2번째 줄	<p>[내용 수정]</p> <p>iii)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p> <p>➔ iii)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p>

[관련판례 ① ~ ⑧ 삭제 후 아래 내용으로 대체]

· 관련판례 ·

- ⑨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한편,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 때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대판2008도7462). 결국, A 주식회사는 甲, 乙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丙이 공범으로 밝혀지자 丙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丙에게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다. 이후 검사는 甲, 乙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⑩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판2010도5795).
- ⑪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 피고인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고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합의건은 기소된 사건과 별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면,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2012.2.23. 2011도17264).
- ⑫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백화점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레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2011도2170).

p. 33~34